

## 9-39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I

2017. 9. 1. 제정

주무부서 : 대학원지원팀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학원에서 실기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의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장 무용학과

**제2조(적용대상)** 2018학년도 이후 대학원 무용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원자격)** ① 학위과정별 입학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 과정(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포함)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 과정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② 석사학위 과정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동일 전공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 ③ 박사학위 과정은 학사학위 과정 또는 석사학위 과정에서 동일 전공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② 각 과정의 재학생이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정규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라도 석사·박사학위 과정은 5회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0회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학위수여 청구 작품 발표 자격을 얻는다. 다만, 학칙 제76조 3항에 의거 수업연한이 단축된 기간만큼 등록 횟수를 줄일 수 있다.
- ③ 석사·박사학위 과정은 5학기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0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정규등록 이후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수여 청구 작품 발표 전 2회 연구등록을 필해야 하며, 본인의사에 따라 매학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1차 연구등록은 수료 후 첫 학기, 2차 연구등록은 학위수여 청구 작품 발표 시로 하고, 미납된 연구등록금이 있을 경우 2차 연구등록금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납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료 후 첫 학기 1차 연구등록 후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한 자에 한해 연구등록금을 1회만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업연한)** ① 석사학위 과정 2.5년, 박사학위 과정 2.5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5년으로 한다.

- ②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각 교과목 취득성적이 95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학칙 제76조에 의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총 평균평점이 4.0이상인

경우 최대 1년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이때, 석사학위 과정, 박사학위 과정별로 구분하여 각각 6개월의 수업연한을 단축하되,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 가능 학기에 적용한다.

**제6조(학점수)** 교과목은 석사학위 과정은 한 교과목당 2학점, 박사학위 과정은 3학점으로 한다.

**제7조(교과과정)**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있는 학과에서는 과정 간에 중복된 과목을 개설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교과목 명칭을 분리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는 전공분야의 심층연구와 졸업 작품제작 발표에 필요한 지도를 목적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졸업 작품제작 발표의 원활한 진행과 심층적 실험 및 창의적 과제 수행을 돕는다.

**제9조(학기당 교과목 개설)** ① 학과의 교과 과정표에 따라서 세부전공별로 과목을 개설한다. 다만, 세부전공별 실기과목과 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과목을 제외한 전공과목은 석사학위 과정은 12학점을, 박사학위 과정은 15학점을 초과하여 개설할 수 없다.

② 교육의 질과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매학기 개설과목 중 60% 이상을 학과 전임교수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10조(교과학점 담당상한)** 교·강사 1인의 담당과목은 세부전공별 실기과목과 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과목을 제외하고 연간 6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한을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수료학점)** 석사학위 과정은 54학점(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6학점 포함) 이상, 박사학위 과정 54학점(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6학점 포함) 이상,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08학점(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12학점 포함)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12조(학기당 이수학점)** 교과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다.

다만,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3 이상인 경우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14학점까지, 박사학위 과정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 이상인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15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다.

**제13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박사학위 과정 수료 학점에 석사학위 과정 취득학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과정별 학점인정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제14조(과정간 학점인정)** 실기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부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5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 석사학위 과정 재학생으로서 5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졸업작품 제작프로젝트 6학점을 포함하여 교과학점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석사학위 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② 박사학위 과정 재학생으로서 5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6학점을 포함하여 교과학점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박사학위 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③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재학생으로서 10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12학점을 포함하여 교과학점 10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제16조(수강과목제한)**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세부전공별 실기과목 제외)은 석사학위 과정에서 3과목, 박사학위 과정에서 3과목,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보충수강)**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보충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6학점 범위 내에서 6차 및 7차 학기에 보충과목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석사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제20조에서 정한 자격을 지닌 자에게 수여한다.

**제19조(석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발표자격)** 석사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작품 제작 과목을 통과한 자
3. 실연심의 심사를 통과한 자
4.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입대로 재학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석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발표 절차)** 석사학위 수여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수여 발표 신청서-----1부
2.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1부

**제21조(박사학위수여 요건)**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제23조에서 정한 자격을 지닌 자에게 수여한다.

**제22조(박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발표자격)** 박사학위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작품 제작 과목을 통과한 자
3. 실연심의 심사에 통과한 자
4. 학과내규에서 요구하는 개별 요건을 충족한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재학연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종합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입대로 재학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박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발표 절차)** 박사학위 수여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사일정에 따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수여 청구 작품 발표 신청서-----1부
2.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석.박사과정 성적증명서-----1부

**제24조(석사학위 실연심의 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수여 실연심의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제25조(석사학위 실연심의 심사방법)** ① 석사학위 실연심의 심사는 학과내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실연심의 심사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박사학위 실연심의 심사위원회)** ① 박사학위수여 발표 실연심의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제27조(박사학위 실연심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각 학과별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하고, 심사 일정 및 장소를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발표주제의 타당성, 발표의 구성 및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실연심의 심사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연심의 심사는 학위수여 발표 이전 학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실연심의 심사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본 발표에 착수할 수 있다.

**제28조(박사학위 실연심의 평가방법)** 실연심의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 심사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29조(실연심의 재심사)** 실연심의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당해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제30조(석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자격은 지도교수자격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④ 외부 심사위원은 1인까지만 위촉할 수 있다.

**제31조(석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평가방법)** 심사와 작품평가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 제32조(석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재심사)** ①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발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33조(박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자격은 지도교수자격에 준한다.  
②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학과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④ 5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심사위원에는 실연심의 심사위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4조(박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심사방법)** ① 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로 한다. 심사 일정 및 장소는 반드시 학과 게시판 및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수여발표로서의 결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③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35조(박사학위수여 청구 작품 평가방법)** 심사와 작품평가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36조(박사지도)**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한 학기에 2편 이상의 작품을 초과하여 지도 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업연한)**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76조 제③항에 의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38조(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이수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이수학점은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08학점(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12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39조(석·박사학위 통합과정 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기 이수한 석사과정 포함) 5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54학점(졸업작품제작프로젝트 6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박사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박사과정 인정 자에 대한 학적관련 제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발급한다.

**제40조(학칙 적용)** 이 시행세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 및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2017. 9. 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